
주민번호 수집 ·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

2012. 4. 20



행정안전부



방송통신위원회



금융위원회

목 차

I . 배 경	1
II . 현황 및 문제점	1
III . 추진과제	3
IV . 향후 추진일정	5

I. 배경

- 주민번호는 행정서비스, 금융·의료·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
 - 전자민원, 세무·병역·복지 등 행정업무에 활용되고, 온라인상 실명확인, 신용카드 등록, 금융거래, 보험 가입, 연세제휴 등에 사용
 - 주민번호 무단 수집·제공, 유출·오남용으로 국민의 불안감 급증
 - 관행적 수집, 제3자 무단 제공 뿐만 아니라, 최근 일부 기업에서 대규모 주민번호 해킹·유출 사례 발생
 - ※ 옥션 1,800만건('08.1), SK컴즈 3,500만건('11.7), 넥슨 1,320만건('11.11) 등
 -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, 스팸발송, 피싱 등에 활용되어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, 사회전체의 문제로 부각
 - ※ 주민번호는 유일성, 평생불변성 특성으로 각종 서비스 기준·검색값(Key 값)으로 널리 활용되며, 유출될 경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피해,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됨
- ⇒ 공공·민간분야, 온·오프라인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주민번호 유출·오남용 피해 근절 및 예방 시급

II. 현황 및 문제점

-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과다 수집·이용
 - 주민번호 수집·이용 웹 사이트는 32만개로 추정되며, 이 중 주민번호가 필수적이 아님에도 수집하는 경우가 29.6만개(92.5%)에 달함
 - 법령, 행정서식 및 계약서에서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요구
 - ※ 63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·이용 허용('12.2월 기준)
 - ※ 8,141개 민원서식 중 3,156개(39%)가 주민번호 요구('11.11월 기준)

□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

- 대다수 공공기관·사업자의 주민번호 관리자 PC(시스템)이 인터넷에 연동되어 있어 해킹 등에 근본적으로 취약
- 사업자는 주민번호를 마케팅 정보로 인식하여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관하거나 재유타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취약

□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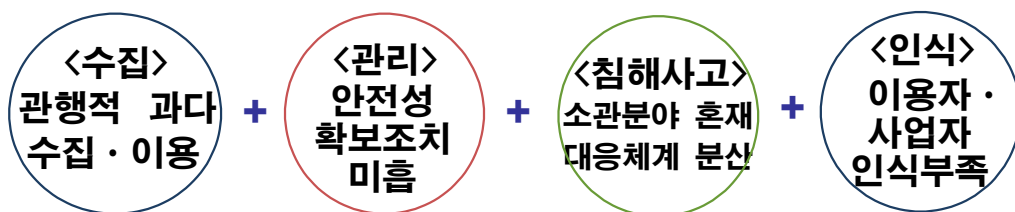
- 각 부처별·사안별로 침해사고 대응 및 조치가 이루어져 신속·효과적인 대응 곤란, 체계적인 예방기능 수행 미흡

※ 행안부 (공공기관, 오프라인 사업자 등), 방통위 (정보통신사업자), 금융위 (금융기관)

□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인식 부족

- 정보보호 투자에 소극적이며, 타인정보 도용에 대한 범죄의식 결여, 자기정보 보호 인식 부족 등 사회전반의 관심 및 노력 미흡

【 주민번호 수집·이용 현황 및 문제점 】



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상존 및 효율적 침해 대응 곤란

Ⅲ. 추진과제

기본 방향

- ◇ 주민번호 수집·이용·관리 단계별 위험요소 최소화
- ◇ 온·오프라인 전분야의 주민번호 사용 최소화 및 단계적 전환지원
- ◇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 마련으로 대국민 신뢰성 확보

1 [수집·이용단계] 주민번호 신규 수집·이용 제한

□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

-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,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주민번호 수집·이용 허용

⇒ 주민번호 수집허용대상 통합 안내 및 불법수집 사이트 신고 창구 운영

※ 온라인 분야는 '12.8월부터 시행, 공공기관, 오프라인 분야 단계적 확대 적용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 ('12년 하반기 제출)

- 조세·상거래 등 기존에 주민번호 사용이 허용된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제 정비

※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「주민번호 수집 심의위원회」 구성·운영('12~'13년)

-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, 금융·통신 업종 계약서 등 일괄 정비

※ 행안부·국토부 등 39개 부처, 410개 법령, 1,558종 서식 개정 추진('12.4월~)

* '주민번호' → '생년월일'로 대체

□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

- 법정 주민번호 수집시에도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i-PIN, 공인인증서, 휴대폰번호 등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

- 공공기관·사업자의 대체수단 도입 및 관련 시스템 전환 기술지원

※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'기술지원 전담센터' 운영('12~'14년)

□ 주민번호 관리 강화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

- 주민번호 관리자 PC를 인터넷망과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 의무화
 - ※ 「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반영 및 시행
- 웹 사이트 상에서 주민번호 게시 차단을 위한 S/W 도입 의무화 및 공공기관 소요예산 반영 추진

□ 주민번호 처리과정 투명화

- 사업자의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 부여
 - ※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
- 주민번호 재위탁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,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
 - ※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('12년) : 재위탁시 안전성 확보조치사항 문서화, 위탁자 동의 등

□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 활성화

- 주민번호 불법매매, 명의도용, 신분증 위조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부처 합동 현장 실태점검 실시
-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, 전방위 협력채널을 통한 유출 주민번호 삭제 조치
 - ※ 해외사이트 전담 서버설치, 모니터링 인력 확충 및 수사기관간 협조

□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·운영

- 주요 분야별 효율적인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 및 실태개선을 위한 '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' 구성·운영
 - ※ 행안부, 방통위, 금융위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
 - 분야별 주민번호 이용관리실태 점검 및 법령·서식 개선 추진
-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예방 - 침해대응조치 -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'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' 신설·운영
 - ※ 행안부 소속 별도조직 구성(행안부, 방통위, 경찰청 등 참여, 정원 7명)

4

(사후조치단계) 사업자·이용자 관심 제고 및 교육 강화

□ 주민번호 유출·불법처리 사업자 처벌 강화

- 주민번호 유출기업에게 과징금(예:매출액의 1%까지) 부과 제도 신설
- 불법행위 책임,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CEO 직무정지, 해임권고 등
 - ※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('12년) : 벌칙 강화 및 징계요구 조항 신설

□ 실천문화 확산 및 교육 강화

- '개인정보보호의 날' 지정 및 개인정보보호 범국민 운동 전개
-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·홍보 강화

IV. 향후 추진일정

-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(비상대응팀) : '12. 8월
- 주민번호 수집·이용 관련 법령·서식 일제 정비 : '12~'13년
 - ※ 부처 합동, 업종·분야별 실태 점검 및 법령 검토 → 지침 마련 → 일제 정비 추진
- 분야별 실태 개선 및 안전성 조치 강화 : '12~'13년